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감사인의 증선위 보고의무 신설 등 〉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49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상혁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7. 8.
3. 회 부 일 : 2024. 7.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내부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감사기구는 이에 대한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제출의무가 내부감사기구에게만 있고, 감사인이나 내부감사기구가 통보나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해마다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지적하는 사례가 200여건씩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내부감사기구가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사례는 4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인이

회계부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내부감사기구로부터 조사 결과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이 통보 및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 22조 및 제47조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감사인으로 하여금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이하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하고(안 제22조제2항), 감사인이 일정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내부감사기구로부터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이하 “조사결과 등”)을 제출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8항 신설).
- 또한, 내부감사기구가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를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생략)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 ----- ----- <u>하고, 해당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u> <u>통보대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u> <u>사실의 대상 및 범위 등은 대통</u>

현행	개정안
③ ~ ⑦ (생략) <u><신설></u>	<u>령령으로 정한다.</u>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감사인은 제2항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제출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4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생략) ③ ~ ⑤ (생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외부감사제도는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회사에 대한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을 통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주권상장법인, 주권상장예정법인, 자산총액 · 매출액 · 종업원 수 등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비상장법인이나 유한회사가 외부감사의 대상임.¹⁾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과건근로자
-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2.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 2023년 말 기준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4만 1,212개사로, 주식회사의 경우 주권상장법인 2,642개사와 비상장법인 3만 7,947개사 등 4만 589개사, 유한회사의 경우 623개사임.

[표1]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단위 : 사, %)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총계
	주권상장법인				비상장 법인	소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소계				
2022	819	1,591	132	2,542	34,411	36,953	566	37,519
2023	833	1,680	129	2,642	37,947	40,589	623	41,212
증감	+14	+89	Δ3	+100	+3,536	+3,636	+57	+3,693
(증감률)	(+1.7)	(+5.6)	(Δ2.3)	(+3.9)	(+10.3)	(+9.8)	(+10.1)	(+9.8)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2024.1.31.)

- 한편, 2018년 11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내부감사기구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감사법」 제22조²⁾에 따른 회계 처리기준 위반사실 통보제도가 시행되었음.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마.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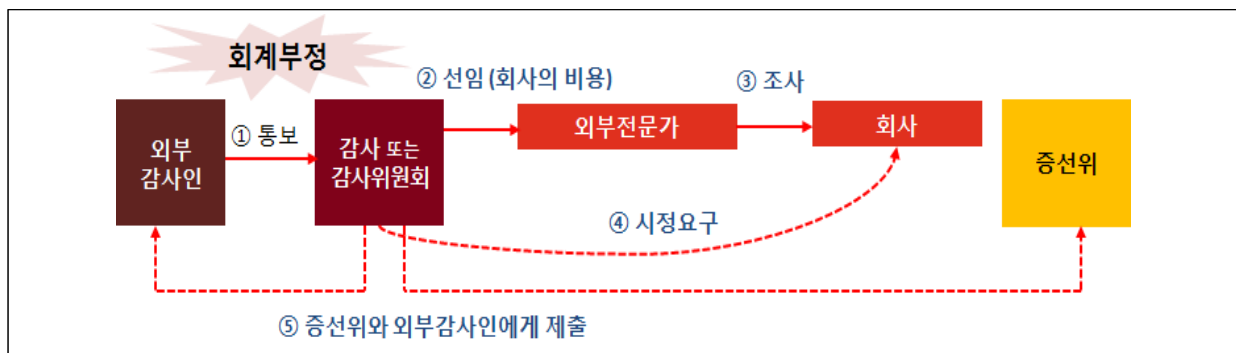
②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서류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외부감사인인 감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고, 내부감사기구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회사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 조사결과 등을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함.

[표2]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통보제도 절차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총 179건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³⁾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감사기구가 조사결과 등을 증선위에 제출한 사례는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⁴⁾

[표3]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사결과 보고현황

(단위: 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건수	(비중)
유가증권	-	2	5	3	10	(23%)
코스닥	3	4	8	5	20	(45%)
비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등)	-	-	3	1	4	(9%)
기타 비상장법인	2	1	1	6	10	(23%)
합 계	5	7	17	15	44	(100%)

(자료: 금융위원회)

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 감리 결과 및 시사점」, 2023.3.12.

4) 다만,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에서는 내부감사기구의 통보대상의 범위를 고의적 위반행위로 설정하면서 단순 오류를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건수에는 고의·중과실뿐 아니라 과실도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감사인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 통보 시점에 그 사실을 증선위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감사인이 일정 기간 내에 내부감사기구로부터 조사결과 등을 제출받지 못한 경우 이를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하며, 내부감사기구가 조사결과 등을 감사인과 증선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이는 회사의 책임 있는 회계처리를 유도하여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현행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통보 제도는 내부감사기구에게 직접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 및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여 내부감사기구 스스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⁵⁾로, 통보시점에 그 사실을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통보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우선 내부감사기구가 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위반사실에 대해 스스로 조치하도록 하되, 감사인에게 조치결과 등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 감사인으로 하여금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 제22조제8항만을 반영하는 입법적 대안을 고려할 수

5)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연구회, 「주석외부감사법」, 2019, p.326.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미국의 「증권거래법」의 경우 이사회에 회계부정을 보고한 감사인이 이사회로부터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통보문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감사인에 대하여 이사회 보고문서를 증권거래위원회에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⁶⁾

□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향후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금융위원회**는 ① 실질적인 내부통제 기능의 작동을 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통보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 ② 통보시점에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할 경우 감사인의 적시 통보 및 통보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③ 조사결과 미제출시 증선위 보고 의무화 등으로도 입법취지가 달성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부감사기구 통보 시점에 증선위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개정안 제22조제2항에 한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 조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①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통보 제도의 도입 취지, 감사인의 통보 위축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내부감사기구

6) 미국의 사례는 【참고자료】 참조

통보 시점에 증선위 보고를 의무화하려는 개정안 제22조제2항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② 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결과 등을 제출받지 못할 경우 해당 사실을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개정안 제22조제8항에 대해서는 내부감사기관이 일정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충실한 조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① 내부감사기구 통보 시점에 증선위 보고를 의무화할 경우 감사인과 기업 간의 의견 조율과정 및 숙의가 없어져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 ② 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로부터 조사 결과 등을 제출받아야 하는 기간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③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하에서 충분한 조사와 시정요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1

【참고자료】 감사절차 중 발견된 부정행위 등에 대한 보고(미국 사례)⁷⁾

미국 증권거래법은 감사인이 회사의 부정행위(illegal acts)를 발견하였거나 그 징후를 알게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 조치를 요구

* Section 10A of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① 부정행위 발생 여부를 결정

-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회사의 경영진에게 즉시 알리고,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적절히 보고되었는지 확인

② 상기절차 후 감사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전달

- 부정행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지에 대한 평가
- 경영진이 시의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 대부분의 경우 감사위원회는 Independent special counsel(주로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을 고용하여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한 뒤, Independent special counsel의 권고에 따라 과거 재무제표 수정, 내부통제강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수행

- 시정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표준 감사보고서 발행을 거절하거나 감사계약을 철회할 것을 고려

③ 감사위원회(또는 이사회)는 감사인으로부터 상기 ②에 따른 검토결과를 전달 받은 후 1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SEC에 보고하고, 감사인에게 SEC 보고문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함

④ 만약, 감사인이 SEC 보고문서 사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감사인은 감사계약을 철회하거나, 상기 ②에 따라 회사에 전달한 검토결과를 SEC에 직접 제출해야 함

⑤ 상기 ④에 의해 감사계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감사인은 상기②에 따라 회사에 전달한 검토결과를 SEC에 직접 제출해야 함

7) 출처: 한국공인회계사회